

林道網擴充으로 經營基盤構築 保全林地轉用에 代替造林費納入

金 廷 柱 / 山林廳法務擔當官

〈前號에서 계속〉

第10條의 4 (林道の 施設等)

- 山林廳長은 山林의 效率의인 開發 利用의 高度化 또는 林業의 機械化 등 林業의 生産基盤 整備를 促進하기 爲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山林所有者에 對 林道를 施設하게 할 수 있다.
- 山林廳長, 市·道知事, 山林組合中央會의 會長 또는 山林組合의 組合長은 林道 施設計劃의 作成 및 施行에 關한 業務를 指導하고 遂行하게 하기 爲하여 當該機關 또는 그 所屬機關에 林道技術者를 配置할 수 있다라고 林道關聯規定 新設

監督等 林道施設에 關한 業務를 遂行하는 專擔山林土木技術者를 確保하여 林道事業 推進을 圓滑이 하고자 하는 措置이다.

第11條(施業義務 및 施業申告)

- 山林所有者가 認可된 營林計劃에 따라 施業을 하고자 할 때 市長·郡守에게 申告하도록 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施業의 경우에는 申告畢證을 交付받아야 한 다는 規定中 申告畢證을 交付받아야 한 다는 規定은 廢止
- 營林計劃에 따른 施業은 모두 市長·郡守에게 申告하도록 하던것을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輕微한 施業은 申告없이 任意로 할 수 있도록 改正

林道는 山林經營을 近代化하고 農山村地域社會의 均衡發展을 爲하여 必要한 公用施設이다.

林業의 機械化를 促進하고 林産物의 流通改善과 落後된 山林地域의 開發을 爲해서 林道施設의 擴大는 必須的이다.

山林廳에서는 林道網 擴大를 力點施策으로 推進하고 있으므로 山林所有者에게 林道施設을 義務化하는 制度的 裝置는 當然한 措置이다.

또한 林道の 設計와 施工에 있어서는 土木技術者를 活用해도 無妨하다는 見解도 많 이 있었으나 林道技術者 配置規定을 新設한 것은 林道の 測量設計 및 工事의 指導·

從前에는 施行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서 營林計劃에 依한 皆伐·擇伐·間伐等은 申告後 申告畢證을 交付받게 하던 것을 이를 廢止하고 申告만으로 施業을 할 수 있도록 改正하였는데 이는 過伐·濫伐等 不法伐採가 있을 수 있는 危險負擔을 무릅쓰고 山林所有者의 施業上 不便을 解消하였다는데 큰 意義가 있다.

앞으로 營林計劃은 營林技術者만이 作成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다 더 計劃의 正確性을 期할 수 있고 施業時 現地 指導 監督을 強化하는 등 運營의 適正을 期한다면 이 에 따른 問題點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山林經營上 支障이 없는 範圍內에서 輕微한 施業은 自律的으로 任意施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不位法令에서 任意施業範圍를 具體的으로 規定하여야 할 것이다.

— 第13條 (營林計劃의 變更命令等) —

市長·郡守는 造林施業上 必要할 때 等 必要한 경우 山林所有者에게 營林計劃을 變更할 것을 命할 수 있으며 期間內에 變更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할 때에는 營林計劃의 認可를 取消할 수 있게되어 있는데 이를 取消하지 아니하고 市長·郡守가 直接 營林計劃을 變更하고 山林所有者에게 通知하도록 改正

이는 山林所有者에게 營林計劃變更이라는 새로운 負擔을 주고 期間內 履行하지 아니할 때 營林計劃을 取消하는 것보다는 行政廳에서 直接 營林計劃을 變更하는 制度를 導入함으로써 變更命令 履行의 實效性을 確保하기 爲한 것이다. 따라서 山林所有者에게는 經濟的 時間的 負擔을 덜어주는 利益도 있다.

다만 行政廳에서 營林計劃을 直接 變更하였을 때 山林所有者가 變更된 대로 施業命令을 遵守한다면 問題가 없지만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繼續 問題點이 남게 된다.

— 第16條 (山林의 利用·區分) —

保全林地區分에 天然保護林·休養林·林業振興促進地域을 追加하는 內容으로 改正

保全林地 制度는 山林의 保全價値 基準에 따라 區分한 것으로서 絶對農地의 概念과 類似한 概念이다.

天然保護林과 休養林을 追加하고 特히 林業振興促進地域도 保全林地로 한 것은 長期的으로 볼 때 林業生産林地로서 他目的의 利用이 制限되어야 할 必要性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在와같은 保全林地의 區分은 保全價値와 利用開發이라는 則面에서 繼續 研究하여 補完해 나가야 될 重要 課題이다.

— 第18條 (保全林地의 轉用制限) —

- 山林廳長의 許可·同意·協議를 얻어 保全林地 (都市計劃區域안의 保全林地 除外)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를 除外하고는 代替造林費를 山林開發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 代替造林費의 納入基準과 節次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도록 關聯規定 新設

最近 山地利用需要가 保全林地에 集中되면서 過去 農地·草地等 農業用에 局限되었던 轉用需要가 골프場, 遊園地等으로 多樣化되고 있고 保全林地 轉用面積이 急激히 增加하고 있어 이러한 趨勢가 繼續될 경우 林業生産基盤의 萎縮과 함께 木材自給 實現에 深刻한 蹉跌이 憂慮되고 있다.

이에 따라 保全林지를 轉用할 때에는 山林資源 造成財源 마련策으로 代替造林費를 納入하도록 하였는데

代替造林費 納入制度는 代替農地造成費 納入制度和 類似하여 保全林地 減少를 誘發하는 原因者에게 經濟的 負擔을 주는 制度로서 이를 通해 保全林地 轉用需要를 抑制해 나가고 納入金은 林業再投資 財源으로 活用하여 山地資源化를 山林利用秩序 回復을 爲해서는 不可避한 施策轉換이다. 따라서 納入金의 基準과 基金의 活用問題는 妥當性있게 下位法令에서 定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